

산업보건 전문가 국제윤리강령

대한산업보건협회 설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산업보건 전문인력의 임무 및 의무, 역할수행조건 등에 관하여 다시한번 정리하여 보는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1992년 산업보건 국제위원회에서 마련한 산업보건전문가 국제윤리강령을 번역소개하고자 한다.

가톨릭의과대학
박정일

기본원칙

다음의 세가지 항목은 국제산업보건위원회(ICOH)에서 마련한 산업보건전문가 국제윤리강령의 기초를 이루는 윤리원칙이다.

산업보건활동은 고도의 전문적인 기준과 윤리원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산업보건전문가는 근로자 개개인 또는 집단의 보건과 사회복지를 위하여 힘써야 한다. 또한 환경 및 지역사회보건에도 기여하여야 한다.

산업보건전문가의 의무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산업보건정책 및 프로그램에서 고도의 윤리적 원칙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 일관된 전문가로서의 규범, 공정성, 그리고 보건자료 및 근로자 사생활의 기밀유지 등도 이러한 의무에 포함된다.

산업보건전문가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완전한 독립성을 갖고 활동해야 한다. 이들은 부여된 의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습득하고 유지해야 하며 또한 적절한 절차와 직업윤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여야 한다.

산업보건전문인력의 임무 및 의무

1. 목적 및 자문역할

산업보건활동의 주된 목적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산업보건전문가들은 타당한 위험평가방법을 사용하여 효과적인 예방조치

를 제안하고 그 시행을 추적하여야 한다. 산업보건전문가들은 산업안전 및 보건영역에서 고용주가 그 책임을 다할수 있도록 적절한 조언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작업과 관련되어 건강을 지키고 증진시킬수 있도록 올바르게 조언을 하여야 한다. 산업보건전문가들은 안전보건위원회가 있는 곳에서는 이 위원회와 직접 접촉하여야 한다.

2. 지식 및 전문성

산업보건전문가들은 항상 작업 및 작업환경과 친숙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또한 스스로의 능력을 제고시키고 과학 및 기술지식, 작업위해에 대하여 숙지하여야 하고, 작업과 관련된 위험도를 낮추거나 제거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산업보건전문가들은 가능하면 정기적으로 작업장을 방문하여 수행되는 작업에 대하여 근로자, 기술자 및 관리자와 상담하여야 한다.

3. 정책 및 프로그램의 개발

산업보건전문가들은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장내의 요인들에 대하여 관리자와 근로자에게 조언을 하여야 한다. 작업위험도를 평가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정책을 수립하고 업무에 맞게 예방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산업보건전문가들은 현재의 과학 및 기술지식과 작업환경에 대한 지식에 기초하여 이러한 정책을 제안하여야 한다. 산업보건전문가들은 사업장내의 유해인자에 대처할수 있으며, 또한 작업안전보건상의 유해요인을 통제하고 이들을 감시하며 재해의 결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들이 포함된 예방프로그램에 대한 조언을 하여야 한다.

4. 예방 및 신속한 활동에 대한 강조

비용효과적이며 기술상으로 문제가 없고 쉽게 시행할 수 있는 간단한 예방조치를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조치들이 효율적인지 살펴보아야 하며, 필요하다면 보다 철저한 해결책을 추천하여야 한다. 작업상 심각한 위험이 의심될 때는 즉각 신중한 주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사후조치

상당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즉 보건 또는 안전에 분명히 위험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 하지 않거나 거부할때, 산업보건전문가들은 가능한 신속히 그들의 의견을 분명하게 글로 써서 적절한 상급관리자에게 제시함으로써 과학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폭로기준 같은 관련된 건강보호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고용주가 법과 규칙을 준수하고 고용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환기시켜 주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나 관련된 근로자와 이들의 대표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소관관청과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6. 안전 및 보건정보

산업보건전문가들은 사실을 숨기지 않고 예방조치를 강조하면서 객관적이고 신중한 태도로 근로자들에게 이들이 폭로되는 작업위해에 대한 정보를 주어야 한다. 산업보건전문가들은 고용주와 협력하여 의심되는 작업위해에 관한 확실히 알려져 있는 수준에 대하여, 고용주가 관리자와 근로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주고 안전보건에 대한 훈련을 시킬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7. 사업상의 비밀

산업보건전문가들은 활동중에 알게된 산업 및 사업상의 비밀을 공개할 수 없다. 그러나 근로자나 지역사회 안전 및 보건을 지키는데 필요한 정보는 숨길 수가 없다. 필요한 경우에 산업보건전문가들은 관련법규시행의 감독책임이 있는 소관관청에 자문

을 구하여야 한다.

8. 건강감시

건강감시의 목적과 구체적 사항을 명확히 정하고 근로자들에게 이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이러한 건강감시의 타당도를 평가하여야 하고 소관관청의 승인을 얻은 산업보건전문가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수행하여야 한다. 선별검사 및 건강감시프로그램에 참여했을때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하여 관련 근로자와 상의해야 한다.

9. 근로자에 대한 정보제공

건강감시에서 행하여진 검사의 결과는 관련근로자에게 반드시 설명되어야 한다. 작업적성의 평가는 근로자 건강에 대한 평가와 작업요구도 및 작업장에 대한 상세한 지식의 바탕위에서 행하여야 한다. 근로자에게 그들의 이익에 반한다고 생각되는 작업적성평가결과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물을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익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10. 고용주에 대한 정보제공

법규에 의하여 시행되는 검사결과는 해당업무에 적합한지 또는 의학적 견지에서 임무수행이나 유해작업폭로에 있어서 제한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만 경영진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작업적성 또는 건강과 관련된 일반적 정보나 유해작업에 의해 생길수 있는 건강장애에 대하여는 관련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후 알려줄 수 있다.

11. 제삼자에의 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상태와 수행되는 작업의 성격이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분명히 알려주어야 한다. 특별히 위험한 경우에는 경영진에게 그리고 법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소관관청에게도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12. 생물학적 감시 및 검사

생물학적 검사 및 기타 검사들은 민감도, 특이도

및 예측도를 잘 고려하여 관련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타당성 있는 검사를 선택하여야 한다. 산업보건전문가들은 신뢰도가 낮거나 예측도가 충분치 않은 검사를 사용해서는 않된다. 또한 검사를 선택할 때에는 가능한한 우선적으로 비관혈적인 방법과 해당근로자의 건강에 위험을 주지않는 검사를 선택하여야 한다. 관혈적인 검사나 근로자건강에 위험을 주는 검사를 하고자 할 때는 그로 인한 이익과 위험을 고려한 후에만 할수 있으며, 보상문제가 생겼을때 정당화될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검사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만 할수 있으며, 고도의 전문적인 기준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13. 건강증진

산업보건전문가들은 보건교육, 건강증진 및 건강검진 등의 활동을 통하여 공중보건에 기여 할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관여할 때 산업보건전문가들은 그 프로그램의 계획과 시행단계에서 고용주 및 근로자 모두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의 개인건강자료의 기밀을 지켜야 한다.

14. 지역사회 및 환경의 보호

산업보건전문가들은 지역사회 및 환경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자신들의 역할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기업의 공정이나 생산과정에서 나올수 있는 환경유해요인을 밝히고 평가하여 예방할수 있도록 조언을 주는데 있어서 적절하게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15. 과학지식에 대한 기여

산업보건전문가들은 새롭거나 의심스러운 작업 유해요인과 그 예방대책에 대하여 학계에 객관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연구조사에 참여하는 산업보건전문가들은 완전한 직업적인 독립성을 갖고 올바른 과학적 기초위에서 활동을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독립적인 적절한 윤리위원회의 평가를 받는 등 연구조사 및 의학연구에 따르는 윤리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업보건전문인력의 역할 수행 조건

16. 능력, 성실성 및 중립성

산업보건전문가는 언제나 우선적으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일하여야 한다. 산업보건전문가는 과학지식과 기술적 능력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그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여야 한다. 산업보건전문가는 성실성과 중립성에 대한 신뢰를 잃을수 있는 어떠한 판단이나 조언, 활동 등도 삼가야 한다.

17. 직업상의 독립

산업보건전문가는 완전한 직업상의 독립을 유지하고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기밀유지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산업보건전문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특히 보건 또는 안전에 명백한 위험이 있는 작업상의 유해인자와 상황에 대하여 고용주, 근로자 및 그 대표에게 조언을 줄 때, 그들의 판단이나 말이 이익갈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8. 평등, 공평 및 대화

산업보건전문가는 산업보건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들과 믿음과 신뢰, 평등의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모든 근로자들은 연령, 성, 사회적 지위, 인종, 그리고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 의견, 질병의 상태 또는 산업보건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게 된 이유 등으로 인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공평하게 대하여야 한다. 산업보건전문가들은 작업 및 작업환경의 조건과 조직에 대하여 가장 책임이 있는 결정을 할수 있는 고위 경영자 또는 이사회 사이에 분명한 대화통로를 만들고 유지하여야 한다.

19. 고용계약에 있어서 윤리조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산업보건전문가는 고용계약시 윤리에 관한 조문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윤리조문에는 특히 전문적인 기준과 윤리원칙을 적용할수 있는 산업보건전문가의 권리가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보건전문가는

바람직한 전문적인 기준과 윤리원칙에 따라서 임무를 수행할수 없는 산업보건활동의 조건은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 고용계약서에는 갈등사안이나 자료열람 그리고 특히 기밀유지 등에 관한 법적 계약상 및 윤리상 지위에 대한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보건전문가는 그들의 고용이나 업무상의 계약이 직업상의 독립성을 저해할수 있는 요소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고용계약서를 소관관청의 도움을 얻어 검토해야 한다.

20. 기록관리

산업보건전문가는 회사내의 산업보건문제를 규명하는데 있어서 적절하게 기밀유지가 되도록 기록보존을 잘 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록들은 작업환경감시자료, 고용기록같은 개인자료, 작업폭로력같은 건강관련자료, 작업위험요인폭로에 대한 개인감시결과 및 적성검사서 등이 있다. 근로자들은 자신의 기록을 볼수 있어야 한다.

21. 의료의 기밀유지

개인건강자료와 의학적인 검사의 결과는 산업의 또는 산업간호사의 책임아래 안전하게 보관되는 기밀자료철에 기록되어야 한다. 의학자료의 열람, 전달 및 공개와 이 자료에 포함된 정보의 사용은 각국의 법이나 규칙, 의료인윤리강령에 의하여 관리된다.

22. 집단건강자료

개인확인을 할수가 없을 경우 근로자 집단의 건강자료에 대한 정보는 책임있는 관리자와 근로자 대표 또는 안전보건위원회에 공개되어 이들이 폭로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의무를 할수 있도록 한다. 산업재해와 직업병은 법과 규정에 따라 소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3. 의료인과의 관계

산업보건전문가는 작업과 관련한 근로자 건강보호에 관계되지 않는 개인정보를 구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산업의는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기위한 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주치의나 병

원의료진에게 자세한 의료정보나 자료를 요구할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산업보건의는 근로자의 주치의나 병원의료진에게 그의 역할을 알리고, 의료정보나 자료를 요구하는 목적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산업의나 산업간호사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주치의에게 유해요인, 직업성 폭로, 근로자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특별한 위험을 초래할수 있는 업무의 제한 및 관련건강자료 등을 알려줄수 있다.

24. 자료남용대책

산업보건전문가는 다른 의료인과 협력하여 근로자에 관한 건강 및 의학자료의 기밀을 지켜야 한다. 특별히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산업보건전문가는 현행의 업무나 과정이 윤리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이 될때, 소관관청에 이를 알려야 한다. 이것은 특히 구두의사표시, 기록유지, 기록이나 컴퓨터에 있는 정보사용시의 기밀보호가 포함된 의료의 기밀유지에 관련된다.

25. 동반자와의 관계

산업보건전문가는 고용주, 근로자 및 그들의 대표에게 완전한 직업상의 독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증대시켜야 하며, 또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산업보건활동의 수용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의료의 기밀유지를 방해하는 어떠한 요소도 피하여야 한다.

26. 윤리의 증진과 전문적인 감사

산업보건전문가는 고용주, 근로자 및 그들의 조직 그리고 소관관청의 도움을 얻어 산업보건활동에서 고도의 윤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적절한 기준이 마련되었는지, 충족스러운지 그리고 결함이 있다면 발견되고 수정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자신의 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감사 계획을 설정하여야 한다. ★